

**학술발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15 : 00 ~ 17 : 20**

**Session 01 - 특별세션**

**장소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301호**

| 시간                      | 특별세션발표                                                      | 발표                                                      | 좌장                   |
|-------------------------|-------------------------------------------------------------|---------------------------------------------------------|----------------------|
| 16 : 00<br>~<br>16 : 30 | • Back to basic with a newly created strategy               | Mr. Bernhard Brender(GM, The Grand Hilton Seoul)        | 조학영<br>(아베파크호텔 총지배인) |
| 16 : 30<br>~<br>17 : 00 | • 중국 계림(귀이린) 관광과 호텔현황                                       | 이수백(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역사문화와 관광대학 부교수)                          |                      |
| 17 : 00<br>~<br>17 : 20 | • Pastry and tradition, and evolution for the past 30 years | Mr. Fabrice Cardelec(Le Cordon Blue Pastry Master Chef) |                      |

# Back to Basic

With a newly created strategy

Grand Hilton Hotel

General Manager

**Bernhard Brender**

BEFORE WE SATRT





1 page

**Optimists have a  
Bright Future**

---

2 page

Optimists have a  
Bright Future



### Optimist

Someone who is **optimistic** is hopeful about the future or the success of something in particular



### Pessimist

Someone who is **pessimistic** thinks that bad things are going to happen.

3 page

Optimists have a  
Bright Future



Make up your mind to have right balance

Smart way to increase productivity

Everything starts with your self

See the opportunity and maintain focus

4 page

## How to cut costs Without 'killing' Business

5 page

How to cut costs  
Without 'killing'  
Business

### HOW and WHERE

- Cut too close to the customers -> loss
- Cut too much talent internally -> loss

My personal  
Priority

1. Knowled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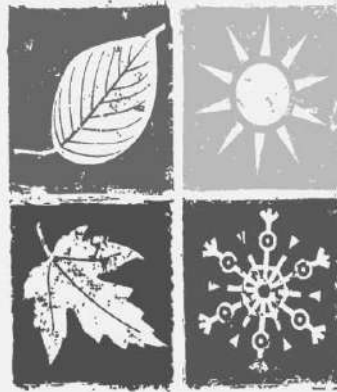


2. Time Management



6 page

## Take advantage From 4 Seasons



7 page

Take advantage  
From 4 Seasons

When you buy **fruits & Vegetables** in season

Best  
Quality

Lowest  
Price

Lots of  
Quantity



REMEMBER

Always **SAFETY SECURITY HYGINE SANITATION** comes first!



8 page

## Conclusion

9 page

### Conclusion

- ❖ Deliver quality of product and service while focus on customers
- ❖ Close down any current business if it does not make a profit
- ❖ Focus on your employees your biggest asset you have
- ❖ Employees must feel free to make suggestions and complains
- ❖ Invest and train your employees



Thank you!

**Q & A**

# 중국 계림(귀이린) 관광&호텔현황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역사문화와 관광대학 이수백 부교수



## Profile

- ❖중국 광서사범대학교  
역사문화와 관광대학 부교수
-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  
장, 산하 차학회 회장
- ❖한국호텔리조트학회 부회장
- ❖한국호텔관광학회 부회장
- ❖전)수원대학교  
호텔관광학부 조교수

## 목차

1. 계림의 관광자원
2. 계림의 관광발전현황
3. 계림의 관광호텔 현황
4. 계림의 관광 및 관광호텔의 문제점



## 계림시(桂林市)

1. 국제관광도시(UNESCO지정)
2. 시내 인구:160만
3. 6개 구, 9개 현, 2개 자치현
4. 카르스트 지형, 귀주와 호남성과 인접
5. 동경109° 36'50"—111° 29'30", 북위24° 15'23"—26° 23'30"
6. 아열대기후, 연평균 기온 18.9℃, 1월 평균기온 15.6℃, 8월 평균기온 23℃, 연평균 습도 73-79%
7. 소수민족: 장족, 요족, 묘족, 회족 등 10 여개.
8. 13개 대학교



## 1.계림의 관광자원

◦5A등급: 4개

◦4A등급:25개

◦3A등급:30개



## 1.계림의 5A급 관광지-1

### 1. 리강(漓江)

◦ \* 계림산수 갑천하(桂林山水 甲天下)

\* 귀이(桂)강의 상류부분을 말함.

\*발원지는 마우얼산(猫儿山, 해발 1500~1800),화남지역 가장 높은 산).

\* 164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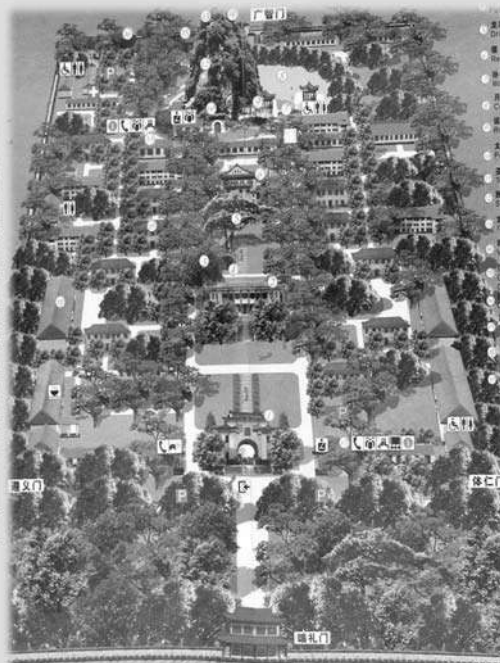
\*관광의 최적 시기: 4-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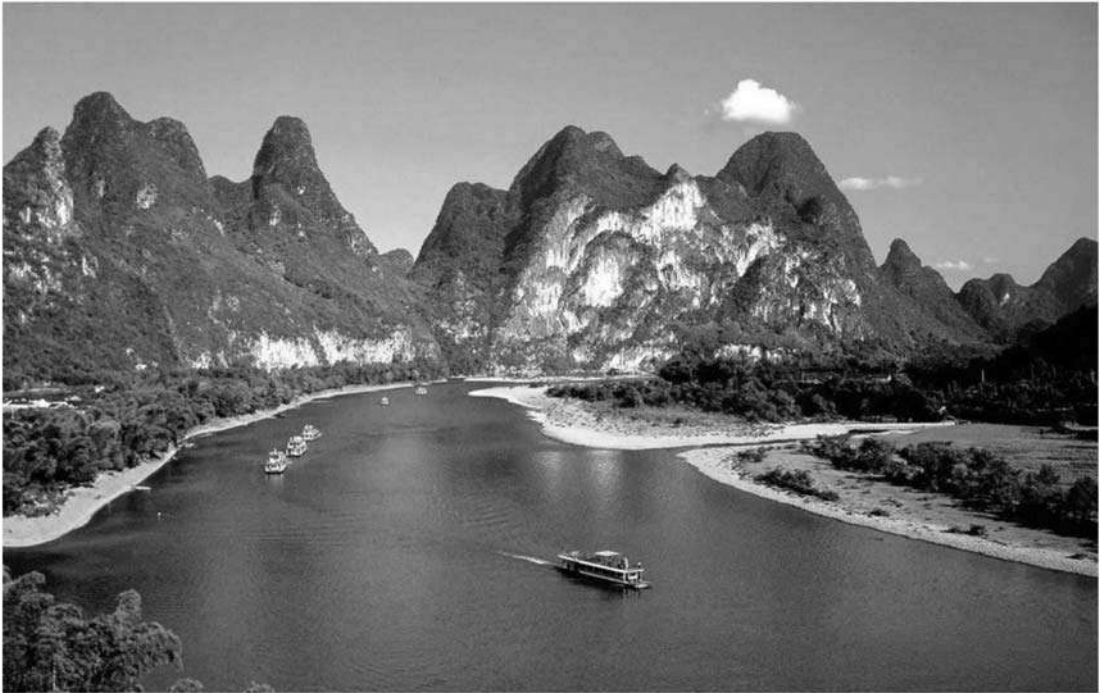


## 계림의 5A급 관광지-2

### 2.독수봉(独秀峰)·왕성(王城)

- \*독수봉은 왕성에 위치함.
- \*왕성은 베이징 고궁보다 32년 일찍.
- \*명나라 번왕 주수겸(朱守謙), 1372년-1392년 지었음.(626년)
- \*계림: 진시황 만리장성, 영거(灵渠, 33km)
- \*당나라 독수봉밑에서 성을 지은 후부터  
천 년 동안 정부나 학교여서 개방되지 않았음.  
관광객은 올라갈 수 없었음.
- \*송나라 왕정공(王正功) “桂林山水甲天下”.







## 2.계림의 관광발전현황

### 관광농장(農家樂):

- ✓ 5성급:9개
- ✓ 4성급:26개
- ✓ 3성급:49개
- ✓ 2성급:9개



### 농어촌관광:

- ✓ 5성급:3개
- ✓ 4성급:5개
- ✓ 3성급:2개



### 3.계림의 관광호텔 현황

2014년부터  
중국의 호텔들의  
탈성급 추세!

◦ 총 58개 호텔(계림 시내 31개, 계림시 아래의 11개 현에서 27개 )

- ✓ 5성급: 5개 (시내 4개, 양삭1개)
- ✓ 4성급: 13개(시내 7개, 현에 6개)
- ✓ 3성급: 30개(시내 15개, 현에 15개)
- ✓ 2성급: 10개(시내 5개, 현에 5개)
- 자료출처: 계림정부 사이트



### 중국호텔의 탈성 (脱星) 급 추세

\*개혁개방 30년, 중국호텔산업 급성장하였음.

-중국 호텔은 총 4000개 정도, 5성급은 약 680개, 1달에 20개정도 폐업함.

-정부의 공공소비 비중을 크게 차지함.

\*2014년 반부패 정책으로 중국의 관광업 매출40% 줄어듦.

-호텔의 전략(1)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

(2)구조조정

(3)오피스텔이나 실버타운으로 전환

(4)탈성급 운동

-2013년에 전국 56개 5성급호텔 스스로 등급을 하향조정

-상하이 2014년까지 완공된 55개 특1급 호텔은 8곳만 5성급으로 신청하였음(탈성율 85%).

\*투자자들이 레지던트 호텔로 쏠림.



## 4.계림의 관광 및 관광호텔의 문제점

계림시 숙박, 외식업체 및 종업원 현황

\*자료:계림시 통계국 2013년(최신)

| 항목    | 업체 수(개) | 종업원(명) | 총자산(억위안) |
|-------|---------|--------|----------|
| 총     | 703     | 22789  | 84.07    |
| 숙박업   | 379     | 14905  | 77.43    |
| 관광호텔업 | 211     | 12268  | 69.86    |
| 여관    | 127     | 2077   | 6.56     |
| 기타    | 41      | 560    | 1.01     |
| 외식업   | 324     | 7884   | 6.64     |
| 일반 식당 | 212     | 6789   | 6.01     |
| 패스트푸드 | 31      | 325    | 0.16     |
| 음료    | 23      | 151    | 0.14     |
| 기타    | 58      | 619    | 0.33     |

## 4.계림의 관광 및 관광호텔의 문제점

2017년 계림시 관광업 소비현황

자료:계림시 통계국

| 항목            |         | 1-12월 합계         |
|---------------|---------|------------------|
| 관광객의 수(만명)    | 합계      | 8232.79          |
|               | 국내      | 7983.89          |
|               | 시내      | 2852.52          |
|               | 입국 1박   | 248.90           |
| 관광객 소비금액(억위안) | 합계      | 971.76(약16.52조원) |
|               | 국내      | 882.89(약15.01조원) |
|               | 국제(억\$) | 13.16(약1.71조원)   |

## 4. 계림의 관광 및 관광호텔의 문제점

1. 5성급호텔은 시내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내 관광객이 매우 적음.
2. 호텔 서비스 교육 부족.
3. 호텔 시설 오래됨.
4. 호텔 직원의 외국어 능력 부족.
5. 호텔의 가성비가 낮음.
6. 계림 시내의 건물 오래되며, 도로 좁음.
7. 관광지 입장권 가격 지나치게 높음.
8. 교통 신호 및 교통관리 허술함.
9. 가끔 바가지를 쓰는 경우 있음.



# Pastry and tradition, and evolution for the past 30 years

By Le Cordon Blue Pastry Master Chef, Fabrice Cardelec



**학술발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15 : 00 ~ 17 : 20**

**Session 02 - 연구윤리세션**

**장소 :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302호**

| 시간                      | 연구윤리세션발표        | 발표                                                         | 사회                         |
|-------------------------|-----------------|------------------------------------------------------------|----------------------------|
| 16 : 00<br>~<br>17 : 00 | · 연구윤리와 IRB의 이해 | 조성연<br>(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br>KIRD 연구윤리 및 IRB 교수요원, KSIRB부회장) | 오석윤<br>(한국호텔관광학회<br>편집위원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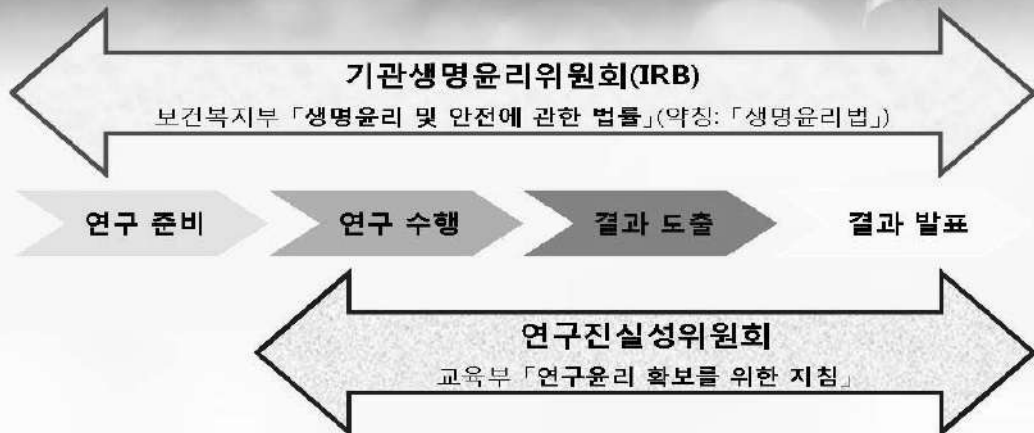
# 연구윤리와 IRB의 이해

조성연  
호서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KIRD 연구윤리& IRB 교수요원  
KSIRB 부회장

## Contents

1. 연구윤리의 필요성
2. 연구부정행위 사례
3. IRB의 이해
4. 올바른 연구윤리 노력

##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 **생명윤리:**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연구대상자)의 보호와 관련된 윤리
  - 연구 수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 확보, 정당한 연구대상자 모집, 연구대상자의 안전 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 **연구윤리:** 연구결과 및 자료의 위조, 변조, 표절 등의 방지를 의미

출처: 박종현(2013). IRB의 역할과 책임. KAIRB 교육자료

3

## 연구(Research)란?

- (Common rule) A **systematic investigation**, including research development, testing, and evaluation, designed to develop or contribute to **generalizable knowledge** (45CFR46)
- **human being:** a living individual about whom an investigator conducting research obtains
- 「생명윤리법」에서의 연구는 **외부 공표(논문게재, 특허등재 등)**를 전제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지식을 체계화한 연구에만 해당됨.

<참고> CFR : Code for Federal Regulation

4

## 연구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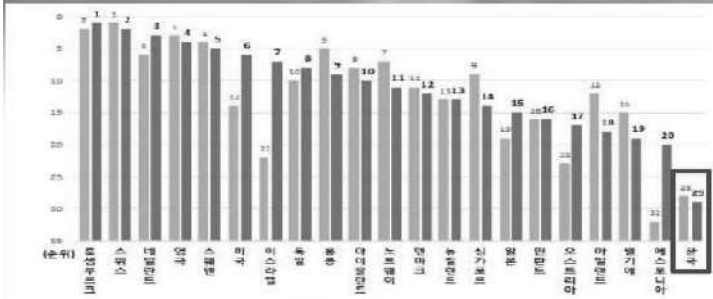
-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한국연구재단, 2011a, p. 12)
  - ⇒ 연구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안내해주는 도덕적 기준이나 원칙
  - ⇒ **연구자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 연구의 도덕성, 연구자의 자기규제 전제** (박광배, p. 3)
- **책임 있는 연구(responsible research)**

출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3). 연구윤리란 무엇인가?, p. 6.

## 표지같이, 옥시파문... 연구윤리 불감증??

[illegible]

## 국가 과학 기술 수준



2017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경쟁력보고서  
결과 26위

자료: WEF, The Global Innovation Index

2016년 순위  
기술 수용성 부문 상위 국가

우리나라 혁신 부문 지표별 순위 추이(2013-2017)

| 구분                  |    | 2013<br>(148개국) |      | 2014<br>(147개국) |      | 2015<br>(140개국) |      | 2016<br>(138개국) |      | 2017<br>(137개국) |      |
|---------------------|----|-----------------|------|-----------------|------|-----------------|------|-----------------|------|-----------------|------|
|                     |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순위              | 점수   |
| 혁신 (Innovation)     |    | 17              | 4.8  | 17              | 4.8  | 19              | 4.8  | 20              | 4.8  | 18              | 4.8  |
| 기업의 혁신역량            | 실면 | 22              | 4.5  | 24              | 4.7  | 24              | 4.8  | 30              | 4.8  | 35              | 4.7  |
| 연구개발 정책 수준          | 실면 | 24              | 4.9  | 27              | 5.0  | 27              | 4.8  | 34              | 4.6  | 32              | 4.8  |
| 기업의 R&D 투자 적극성      | 실면 | 20              | 4.5  | 20              | 4.6  | 21              | 4.6  | 23              | 4.6  | 28              | 4.4  |
| 상위 연구개발 정도          | 실면 | 26              | 4.7  | 26              | 4.6  | 26              | 4.6  | 29              | 4.4  | 27              | 4.4  |
|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   | 실면 | 31              | 4.0  | 20              | 4.1  | 24              | 3.9  | 37              | 3.7  | 32              | 3.8  |
|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    | 실면 | 33              | 4.6  | 42              | 4.4  | 40              | 4.4  | 39              | 4.4  | 38              | 4.5  |
| 연구 예산 및 R&D 투자액의 증가 | 실면 | 9               | 18.4 | 8               | 20.5 | 7               | 22.3 | 5               | 23.2 | 5               | 24.5 |
| 지식재산권 보호            | 실면 | 48              | 4.0  | 68              | 3.7  | 62              | 4.2  | 49              | 4.4  | 64              | 4.4  |

출처: KSTIP 동거브리프 제16호

주) \*는 지도 부위에도 포함되는 지표로서 1/2의 값을 가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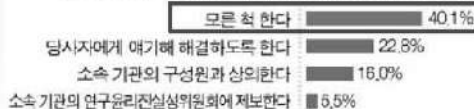
## "업적 스트레스 때문에 연구부정행위"

대학 연구자 2천679명 인식조사: 교수신문 (2014. 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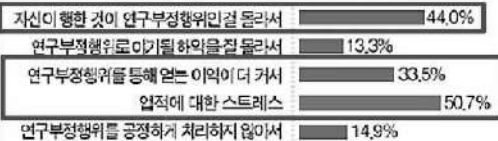
● 최근 2년간 목격한 타인의 연구부정행위 및 부정결행위 유형 (복수응답)



●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목격했을 때 해결 방법은 (복수응답)



● 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다고 생각하나 (복수응답)



- Pressure
- Funding
- Fame (name)
- Competition
- Personal
- Opportunity

※ 2014년 2월 26일에서 3월 18일 사이에 4년제 대학  
 ※ 교수 2,069명 (77.2%), 준임연구원 274명 (10.2%),  
 ※ 인문사회 1,001명 (40.8%), 이공학 844명 (31.5%),  
 ※ 출처: 4국대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연구윤리인재

학생 17명 (0.6%)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29530>

출처: 전주홍(2015. 4. 2). 연구윤리와 연구노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연구윤리교육 강의안, p. 4

## 연구윤리 평가의 필요성

- 국가정책 연구를 선도하는 국책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준수
- 창의적인 국가정책 대안 산출 유도 노력
-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립 유도·촉진
  - 2012년 연구기관 연구보고서 연구윤리 평가제도 도입
  - 2015년 연구윤리 평가결과를 연구기관 평가에 4%의 비중으로 반영
- 학술지평가 시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 5점, 항목과락
  - 학회 구성원 대상 온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
  - 인간대상연구의 경우,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확인 등
- “...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수준을 향상하도록 유도 및 촉진”의 방향 제시
  - 2016년 연구윤리 평가 규정 개정
    - 국책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표절 의심사례 예외 조항 신설
    - 부당한 저자 표기의 명확화
    - 출처 표기 및 대상의 명확화

9

## 연구윤리 확산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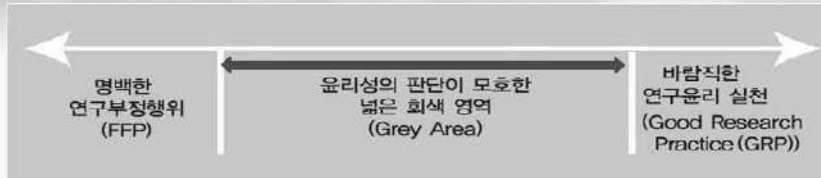
- 연구공동체의 강한 집단응집력으로 인한 제도화의 어려움 ⇒ 온정주의
- 타율적인 의무와 같이 형식주의 가능성
- 표절과 위·변조를 묵시적으로 강요하는 관료집단의 단기실적 주의
- 공동연구를 실시하기 이전에 연구의 책임 범위, 연구윤리의 배경이론이 되는 윤리학 이론에 대한 경시 및 연구윤리의 이해 부족
-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집단과 공유하여 소통한다는 의식 부족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숨방망이 처벌
- 연구윤리 전문가 부족

☞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한 결과를 연구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관심 있는 사람, 즉 집단과 소통한다는 의식을 공유하여 연구결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석하고 전달해야만 함 (손순중, 2010)

참고: 김항민(2014). 연구윤리: 올바른 인용과 보만. 제5회 모산대학교 연구윤리 워크숍 자료집, p. 61을 수정함.

10

## 연구윤리의 SPECTRUM



| 바람직하지 못한 연구 활동(행동)                    |                                                                                                      | 바람직한 연구 활동(행동)                                             |
|---------------------------------------|------------------------------------------------------------------------------------------------------|------------------------------------------------------------|
| 연구부정행위<br>(Research misconducts)      | 연구부적절행위 또는 의심스런 연구 수행(QRP)                                                                           |                                                            |
| 위조, 변조, 표절(FFP)<br>(연구 수행에서 가장 나쁜 행동) | 부당한 저자 표기, 중복게재, 의심스런 데이터의 조작 (data massage or cooking), 무임승차 등 (연구부정행위와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의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 | 책임 있는 연구 수행(RCR) 혹은 연구 수행(GRP)<br>(연구 수행에서 도달해야 할 이상적인 행동) |

### ➤의심스런 연구수행(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 혹은 연구부적절행위

출처: 김옥주(2007). 외국의 연구윤리 실천 현황, p. 40.

이인재(2012).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 RM, QRP, RCR 또는 GRP. [http://www.cre.or.kr/article/ethics\\_articles/1382492](http://www.cre.or.kr/article/ethics_articles/1382492)

11

## 연구부정행위의 SPECTRUM

[카이스트인물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Nov 15, 2000

KAST 연구원

출처: 최훈, 신중섭(2007). 연구부정행위와 연구규범. *과학철학*, 10, p. 115.

12

## 연구윤리의 이해 필요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153호, 2015. 11. 3.)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술진흥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연구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학술진흥법」 제2조 제2호, 제3호, 제4호와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문기관"이라 함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3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
2. "변조"는 ~~~
3. "표절"은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14

##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15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cont.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16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cont.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항목 추가

17

## 표절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모바일 앱  
인포그래픽

##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 표절의 유형



## 拙盜易擒體

## 01 아이디어 혹은 구성 표절

무단으로 타인의 독창적 생각이나, 사고구조, 논리를 모방하여 활용하는 행위

## 02 텍스트 표절

원저자의 저작물(단어, 문장, 표, 그래프, 사진, 그림 등)을 출처표기 없이 사용

## 03 모자이크 표절 (mosaic plagiarism)

출처표기 없이 문장을 변형하여 자신의 저작물처럼 만드는 행위

## 04 말 바꾸기 표절 (Paraphrasing Plagiarism)

타인의 글에 말을 바꿔 쓰거나 요약하여 활용하면서도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 05 큰따옴표 누락

직접 인용 시 큰따옴표로 인용 부분을 표기하는 것을 누락한 행위

## 06 출처의 내용이 추가되었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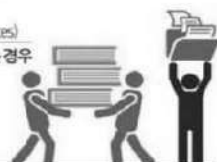
인용표시는 했지만, 인용문의 내용이 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 07 포괄적 혹은 부분적 출처표기

책이나 논문의 제목 등 포괄적인 출처표기 혹은 부분적 출처표기로 독자가 원문출처를 정확히 인지할 수 없게 하는 행위

## 08 2차적 저작물의 표절 (plagiarism of secondary sources)

2차 저작물에서 가져왔으면서도 원저작물을 본 것처럼 인용하는 경우



18

## 로제팅 (Rogeting)

- 표절검사소프트웨어를 우회하기 위해 상당수의 단어를 유사어로 대체하는 표절 행위
- 이를 찾아내는 것이 Bela Gipp이 개발한 인용기반 표절검사 (CbPD: Citation-based Plagiarism Detection)
- 논문 상에 인용된 언어의 의미론적 특성을 활용하여 논문 상의 인용 내용과 순서를 파악, 표절한 텍스트의 원문과 비교하여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지 확인



19

##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표절 판단 완화 기준

-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① 타인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 미제시** 혹은 **페이지의 미기재**
- ②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의 부분에서 타인 저작물의 요약,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의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③ 협동연구 수행 시 종합보고서나 총괄보고서 작성 중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④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시 선행 연구 및 연구방법론 기술의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⑤ 판례·법령을 인용할 때, **판례번호·법조항의 표기**
- ⑥ 표·그림·사진 등에 출처를 표기하였고, 해당 자료의 설명 시 본문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해당 표·그림·사진 등 만으로도 본문 내용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

20

## 연구보고서의 출처표기 원칙

1. 문장 단위가 원칙  
단, 선행연구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서 타인 저작물을 간접인용 (말바꿔쓰기나 요약 등) 시,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의 경우 보고서 가독성 측면 고려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허용
2. 학문 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방법 달리함  
단, 일관성 유지 필수
3. 연구보고서의 종류 별로 방법 달리함
4. 본문 인용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 사항을 제시해야 함  
단, 미인용 자료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경우에는 관련 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킴
5. 인터넷 자료 인용 시 해당 URL 및 접속 날짜 표기해야 함
6. 표, 그림, 사진 인용 시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 표기해야 함
7. 원본 자료 수정 인용 시 원본에 대한 출처 표기와 원본 수정 사실 밝혀야 함<신설 2016.4.15.>

21

## 연구보고서 작성 시 인용 방법

1.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원칙에 의해 합리적 방식으로 인용
2.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인용
3. 3줄 이내 인용 짧은 글의 직접 인용 시 인용부호(" ")로 제시
4. 길게 직접 인용 시 단락 나누어 인용 단락 표시(indentation) 후, 해당 페이지 제시
5. 말바꿔쓰기, 요약 등 간접 인용 시에도 출처 표기

22

## 연구보고서에서의 출처 표기 대상

### 1. 인쇄된 자료

- 책, 학술 논문, 신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개정 2016.4.15.>

### 2. 전자 자료

- 디지털화된 자료(전자책, 전자저널, 전자화된 학술지 등)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SNS 등 <개정 2016.4.15.>

### 3. 데이터

-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 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회 지표 등

### 4. 이미지

- 그림, 그래프, 표, 설계도면, 지도, 사진 등 <개정 2016.4.15.>

### 5. 기록물

-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 6. 구두 자료

-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23

## 연구보고서에서의 출처 표기 제외 대상

- 비공개 전문가 토론 자료
-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 정부부처 비공개자료
- 발주기관 비공개자료 등

⇒ 연구기관의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 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4

## 일반적 지식

- ◆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확립된 사실(established facts)
  - ✓ 역사적 사실이나 날짜(historical dates and facts)
  - ✓ 어떤 학문 분야에서 확립된 원리(established principles in a field)
- ◆ 일반적 지식에 대해 누군가의 의견이나 해석이 가미된 것을 활용 할 때는 출처표시를 해야 함.
  - 자세한 통계 수치나 내용이 변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논쟁적인 사실 등에 대해서는 출처표시를 해야 함.
- ◆ 일반적 지식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면, 출처표시를 하는 것이 좋음 (When in doubt, cite it.)
  - 출처표시를 덜 하는 것보다 과도하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출처: 이연재(2016. 3. 22). 호서대 연구윤리특강 자료집, p. 16.

25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cont.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항목 추가

26

## 저자의 자격(Authorship)

### ✓ 국제의학학술편집위원회(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조건

(과거)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ICMJE)

(2013년 8월)

-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득, 분석, 해석
-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에 대한 비평적 수정
-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 불인정의 기준

- 단순한 기술지원, 데이터수집, 논문작성 혹은 행정관리 등의 조력
- 연구비의 지원, 연구그룹의 관리역할 수행
- 후기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ment)에서 공로인정

출처: 배종우(2016. 4. 29). 연구자가 알아야 할 연구출판윤리와 우리나라에서 흔한 사례. 이화여자대학교 강의자료집, p. 35.

27

## 저자의 종류

**고신저자**  
투고저자, 통신저자

-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를 제출한 저자
- 논문투고, 심사자와의 교신역할 수행
- 연구의 총체적 책임을 가짐

**주저자**  
책임저자(primary author)

- 주 연구자 혹은 연구책임자(PI)
- 고신저자, 제1저자와 함께 공저자와 저자순서를 결정함

**공저자**

- 제1저자와 마지막 저자 사이의 저자
- 저자의 결정 및 연구결과의 제1주저자-공저자가 함께 가짐

**제1저자**

- 연구데이터 수집 및 결과 도출에 주요한 역할 수행
- 투고한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 자



**선물저자 (Gift Author)**

저자의 자격이 없는 연구자를 개인적 친분 등의 이유로 저자에 등재시키는 행위



**교환저자 (Swap Author)**

관련 분야의 연구자끼리 자신의 연구성과에 상대방을 포함시켜서 입역을 무물라는 행위



**유령저자 (Ghost Author)**

연구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성과발표 시 저자에서 배제되는 경우



**도움저자**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해당분야 유명 연구자를 본인 허락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모바일 앱 인포그래픽

28

##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cont.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41/68

## 중복게재

- 이미 출판된 논문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논문을 동일학술지에 권, 호수를 달리하거나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 duplicate(redundant, dual, divided, fragmented, repetitive) publication
-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유사한 내용의 논문 혹은 같은 주제에 대한 review를 다른 학술지에 동시에 혹은 거의 동시에 게재하는 것
- 이전의 논문에 data를 첨가하거나 이전과 동일한 data를 다소 다르게 분석하는 것
- 중복게재는 비교되는 논문이 반드시 동일하지 않음
- 유형
  - 논문쪼개기
  - 논문 덧붙이기
  - 데이터 증보
  - 이중게재, 자기표절 등

참조: 이인재(2010), pp. 57-59/ 이인재(2016, 3. 22). 호서대 연구윤리특강 자료집, p. 29.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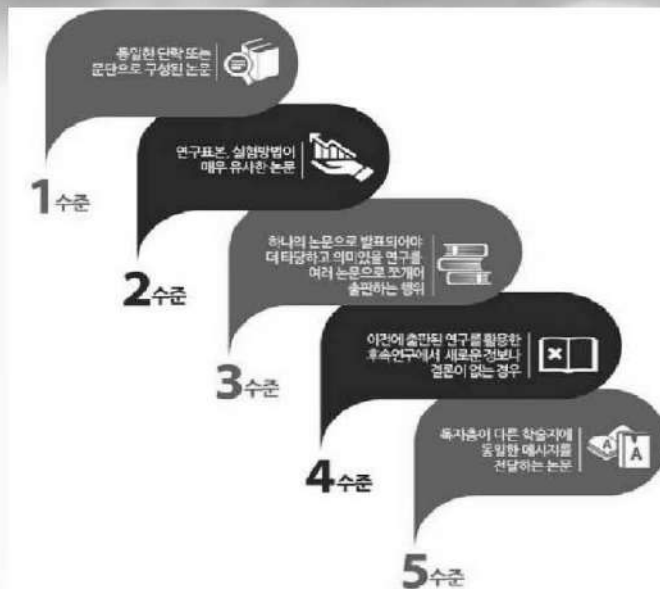
## 중복게재를 판단하는 기준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모바일 앱 인포그래픽

30

## 중복게재 수준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모바일 앱 인포그래픽

31

## 영국 출판윤리위원회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 COPE)

- ✓ 발표한 연구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지 않는 한 반복할 필요가 없다.
- ✓ 학회에서 초록 발표한 것을 출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고 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투고 시 원논문을 자세하게 제공한다면 다른 언어로 재출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밝혀야만 한다.

32

##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중복게재 판단 완화 기준 1

- ✓ 연구기관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 ① 자신의 미출판 학위논문 내용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활용
  - ② 특정 기관의 요청이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전 보고서 활용  
(예: 용역보고서의 요약, 정책 제안서 등)
  - ③ 연구의 초고, 이슈페이퍼, 연설문, 비학술성 잡지, 워킹페이퍼, 브리프 등에 실린 원고, 기타 이에 준하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 자료의 활용
  - ④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하면서 출처는 밝혔으나 인용부호(" ") 미기재 혹은 페이지 누락

33

## 연구보고서의 특성을 고려한 중복게재 판단 완화 기준 2

- ⑤ 선행 연구의 소개(검토), 방법론 기술, 외국사례 등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신의 저작물을 말바꿔쓰거나 요약, 특정한 표, 그림 또는 사진이 아닌 부분의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⑥ 협동연구 수행 시 종합보고서나 총괄보고서 작성 중 세부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⑦ 연차보고서 또는 동일한 주제를 확대·심화하는 연구보고서 작성 시 선행 연구 및 연구방법론 기술의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기
- ⑧ 자신이 이미 발표(게재)한 저작물 중 학술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책적 제언을 적절한 범위 내에서 연구보고서에 재활용하는 경우

34

## IRB의 이해

## 인간대상연구

### ✓ 「생명윤리법」 제2조(정의)

1.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를 말한다.
2. "연구대상자"란 인간대상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 ✓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2조

-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 등을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36

## IRB 기본 원칙

-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
  - 연구대상자 등의 인권과 복지 우선 고려
  - 연구대상자 등의 자율성 존중
  - 연구대상자 등의 자발적 동의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informed consent)
  - 연구대상자 등의 사생활 보호
  - 연구대상자 등의 충분한 안전 고려, 위험 최소화
  -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특별한 보호
  -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 모
  - 보편적 국제기준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
- ⇒ 외부 공표 목적, 유효기간 1년, 사전심의와 지속심의 원칙, 서면동의 필수 등
- Nuremberg Code (1947)
  - Declaration of Helsinki (1964)
  - Belmont Report (1979)

<근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조

37

##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SBR)

- 연구방법마다 다른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
    - Privacy 보호, 비밀보장(Confidentiality), 익명성(Anonymity)이 중요 고려 사항
    - 방법 : 실험실실험과 현장실험, 설문조사와 인터뷰, 관찰 및 기록 연구 등
  - **Privacy**
    -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개인의 권리
    - 관련 위험 : 사생활 공개, 연구대상자의 자아통제력 상실 가능, 불안감 등
  -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공유되어 수집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 **익명성(Anonymity)**
    -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자료 수집, 혹은 수집된 정보의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니면 식별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됨
    - 법적 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 ⇒ **보호 대책** : 익명화, 개인식별정보 영구 삭제, 고유식별기호 사용 등

38

## SBR에서의 위험

중증 위험이 과소 평가되는 경우와 속임수(deception)연구도 있음.  
⇒ 연구 후에 반드시 동의 받아야 함.

### ➤ 위험의 종류

- ① 심리적 위험 : 일시적 근심과 우울, 스트레스, 행동장애의 재발과 촉진, 죄책감, 혼란
  - ② 사회적 위험 : 왕따, 낙인, 지위상실
  - ③ 경제적 위험 : 실직, 고용능력저하
  - ④ 법적 위험 : 체포, 민형사상 책임
  - ⑤ 육체적 위험 : 사망, 고통, 이상반응(부작용), 침습적 처치에 의한 손상
- 연구자는 다양한 방법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도록 연구설계하고,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함.

39

## IRB의 주요 관심

연구자 :  
연구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연구대상 :  
연구 시 실제로  
보호받고  
있을까?



40

## IRB의 역할

연구자 및 종사자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

연구 시작 전 연구계획서 등

심의, 심의 면제 확인

Total  
Service

조사, 감독

보호대책 수립

취약한 연구대상자

윤리지침 마련

41

## 심의 종류

### 1.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모든 연구계획서 심의

### 2.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 1)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 포함 2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
- 2) 신속심의를 부결할 수 없다.  
부결에 해당하는 경우, 정규심의회 회부
-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이 최소한의 위험 이하며,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신속심의범주에 해당하는 연구
- 4) 취약계층 대상 연구는 신속심의 불가

### 3. 심의면제(Exemption)

42

## IRB 심의 내용

<근거> 「생명윤리법」 제10조 ③항

###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과학적 타당성 : 연구방법의 오류 등 피험자 보호 측면 관련 경우 심의
- 윤리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의 존중(informed consent), 보호대책 등

### 2.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위력이나 권위로 피험자를 모집하는지(conflict of interest) 등 검토

###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위기 및 돌발상황 발생 시 대처 계획 수립 여부 검토

###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익명화, 사생활 보호 등

### 5.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3

## IRB 심의 결과

❖ 연구책임자에게 심의 결과 서면 통보

① 승인(approval) - 연구수행 진행에 이의 無

② 시정승인(conditional approval)

- 수정 후 승인 : 사소한 행정적 보완 필요 → 조건부 연구 개시  
시정내용을 서면으로 보완하여 연구자가 제출
- 수정 후 재심의 : 수정 후 신속심의
- 동의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시정승인이 될 수 없음.

③ 보완(modification required to its approval)

- 문제가 있으나 연구계획서의 수정으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경우
- 보완된 연구계획서 : 정규심의를 통한 재심의

④ 부결(disapproval) 혹은 반려(reject) : 연구계획서의 승인 불가

⑤ 연구의 중지 또는 보류

44

## IRB의 역할과 책임

협동



45

## 연구부정행위의 해악

- 잘못된 실험결과로 인한 사회적 피해
- 동료 연구자의 시간과 노력 소모
- 연구비의 낭비 및 국민의 경제적 손실과 혼돈
- 연구효율의 저하 및 연구공헌의 왜곡
- 국민의 과학과 학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구개발 위축
- 과학공동체 내부의 불신 초래 및 동료 신뢰의식 붕괴
- 부적격한 연구자 양성

출처: 김주섭(2009). 과학연구윤리와 대학의 역할. 한양대 전문직윤리연구소 연구윤리 워크숍 발표자료, p. 17.  
(<https://www.cre.or.kr/article/educations/1382470>)  
황은성(2014). 책임있는 연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윤리 교육 자료집, p. 3.

46

## 연구윤리 정착을 위한 노력 경주

- 연구자 자신의 연구윤리에 대한 가치관 정립
    - 표절이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올바른 인용방법에 대한 지식 획득
    - 원저작자에게 정직하게 감사(인정)하는(acknowledge indebtedness) 태도 필요 (이인재, 2007, p. 67)
  - 연구자 자신의 올바른 인용을 위한 노력과 연구자 간의 연구윤리의식 공유 및 소통 필요
  - 책임 있는 연구를 위한 공동의 가치 :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 (교육인적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2006, p. 7)
  - 논문발표에서의 연구진실성 지키기
  - 과학자이자 과학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식하기
- <참고> 미국과학한림원, 미국공학한림원, 미국의학한림원 (2015. 6 출간)
- ▶ 과학자가 되는 길은 연구 윤리를 지키는 것
    -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과학 연구의 성격 때문
  - ▶ 과학 연구를 위해 준수해야 할 윤리적 문제

### 과학자가 되는 길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지침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15년 6월 1일

2015년 6월 1일  
출간

149쪽

47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문 취소



## 연구자가 지켜야 할 원칙 (D. Resnik)

01. **정성적 (Honesty)**  
실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왜곡하지 않아야 함
02. **신용성 (Credibility)**  
연구 수월성 신중집을 기하여 후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함
03. **개방성 (Openness)**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데이터 및 결과, 방법 등 연구내용을 공유
04. **자유 (Freedom)**  
연구주제 및 결과 수월이 자율성
05. **공로 (Credit)**  
연구성오자의 공로는 반드시 인정되어야 함
06. **교육 (Education)**  
후학의 성장과 대용어의 과학적 지식 전파
07.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사회의 안녕함을 가지는 연구는 하고, 공공의 이익의 창출을위해 노력함
08. **합법성 (Legality)**  
연구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을 준수함
09. **기회 (Opportunity)**  
과학적 자원의 사용과 직업적 기회는 공정하게 보장됨
10. **상호존중 (Mutual Respect)**  
학계 연구하는 동료들 항상 존중해야함
11. **효율성 (Efficiency)**  
연구자에게주어진 과학적 자원은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함
12.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ubjects)**  
선행대신 실험 시 시험자에게에 대한 존경심 존중이 필요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모바일 앱 인포그래픽



